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 기준 강화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0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 기준 강화	2
※ 참고자료	8
1.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8
2.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취소 미처분 현황	10
3. 영업정지 후 등록취소 유사입법례	11

I. 제안경위

2025년 3월 7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 기준 강화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최근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3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최근 <u>1년</u> 이내에 두 번의 영업	3. ---- <u>3년</u> -----

현행	개정안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 8. (생략) ② (생략)	-----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¹⁾,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1호),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제2호),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호) 등에는 필요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한 세부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³⁾).

[환경영향평가업체 현황]

(단위 : 업체 수)

구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62	379	363	367	361	356	349
1종	298	323	305	304	295	288	275
2종	64	56	58	63	66	68	74

※ 출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체 영업정지 처분 현황]

(단위 : 업체 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42	58	18	19	27	21
1종	41	53	16	18	26	20
2종	1	5	2	1	1	1

※ 출처: 환경부

그런데, '24년 국정감사에서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하지 아니한

2)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사례가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저하와 국민의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⁴⁾⁵⁾.

이에 개정안은 등록취소가 되는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 기간 기준을 현행 ‘최근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다만, 현행법 및 시행규칙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법」 등 유사입법례와 같이 해당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⁷⁾⁸⁾.

4) <참고자료 2.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취소 미처분 현황>

5) 환경부는 이에 대하여 등록처분 취소 대상 업체 미처분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제재처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을 보고함.(자료: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5.3.)

6) 참고로, 일정 기간 내에 일정 횟수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를 규정한 유사입법례로는 「화학물질관리법」(3회 이상/ 2년), 「물환경보전법」(2회 이상/ 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회 이상/ 2년), 「공동주택관리법」(2회 이상/ 3년), 「건설기술진흥법」(3회 이상/ 5년) 등이 있음.

<참고자료 3. 영업정지 후 등록취소 유사입법 사례>

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2, 제3호의 2, 제3호의 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업정지 처분 세부내역 (2019~2024년)]

위반내역		위반건수		행정처분 기준			
		건수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기술인력 부족	1종3분의 1 미만 부족 (2종2명 미만 부족)	77	41.6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종3분의 1 이상 부족 (2종2명 이상 부족)	61	33.0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변경등록 하지 않고 중요사항 변경		9	4.9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거짓	25	13.5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부실	6	3.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재대행 미승인)		5	2.7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		1	0.5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1	0.5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출처: 환경부

8)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사)환경영향평가협회”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개별기준은 고의성 또는 중대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감점으로 인한 이중처분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시 ‘기술인력 퇴사(이동), 장비 교체, 기초자료 보관 미비 등’ 경미한 경우도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존속 및 경제활동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한 후 등록취소 년 수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19~2024년 자료를 기반으로 개정안 적용 시의 연평균 등록취소 건수 예측 건수는 1.8건으로(현행 0.8건 대비 약 1건 추가) 현행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나,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 등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 마. (생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2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5호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기술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고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재대행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4호	경고	등록 취소		

2.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취소 미처분 현황

- 국정감사 중 지적사항(이용우 의원)으로 각 유역·지방 환경청 전 수조사 결과 총 4건의 등록취소 처분 미흡 사례 확인

<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취소 미처분 현황 >

등록취소 사유	관할청	업체명	위반내용	위반 차수	처분일	처분내용	비고
1년이내 영업정지 3회	낙동강청	(주)00 엔지니어링	평가서 거짓작성	1차	'20.08.18.	영업정지 6월	
			평가서 거짓작성	1차*	'20.09.29.	영업정지 6월	
			기술인력 부족(1/3미만)	2차	'21.07.20.	영업정지 1월	
		00	기술인력 부족(1/3미만)	2차	'19.08.14.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21.7.)
			불법 재대행	1차	'20.02.17.	영업정지 6월	
			기술인력 부족(1/3이상)	1차	'20.07.14.	영업정지 6월	
		(주)00 연구소	평가서 거짓작성	1차	'20.08.18.	영업정지 6월	자진 폐업 ('22.3.)
			평가서 거짓작성	1차*	'20.09.11.	영업정지 6월	
			기술인력 부족(1/3이상)	1차	'20.09.29.	영업정지 6월	
			평가서 거짓작성	1차	'21.06.28.	영업정지 6월	
	원주청	(주)00 기술단	기술인력 부족(1/3미만)	2차	'22.04.14	영업정지 1월	자진 폐업 ('23.12.)
			기술인력 부족(1/3미만)	3차	'22.07.18	영업정지 3월	
			기술인력 부족(1/3미만)	4차	'23.02.01	영업정지 6월	

* 1차 처분일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다시 1차 처분 적용 (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 조치계획

-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 처분시 해당 업체의 처분이력 확인 요청 및 담당직원 교육 강화

- 환경청 처분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실시('24.12~), 환경청별 순회 설명회(7회)

※ 출처: 환경부

3. 영업정지 후 등록취소 유사입법례

법률명	관련 조문
화학물질관리법 (3회 이상/2년)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2회 이상/1년)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회 이상/2년)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3회 이상/2년)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교통안전법 (3회 이상/2년)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3회 이상/2년)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2회 이상/3년)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3회 이상/5년)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출처: 환경부